

#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9,969,126	12,899,074
일반회계	391,237,093	11,737,113
특별회계	38,732,033	1,161,961
공기업특별회계	24,324,566	729,73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092,054	482,76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232,512	246,975
기타특별회계	14,407,467	432,224
주택사업특별회계	358,682	10,76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598	3,078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43,600	10,30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09,060	54,272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904,593	27,138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70,763	17,1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19,936	15,598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4,313,457	129,40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430,000	72,9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45,000	70,35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709,778	21,293

제 2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1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89,95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물품취득비 5.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